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I. 기본정보

기관명	예성실버요양원
설치일자	2022.06.30
소재지	충북 제천시 용두천로 333 (청전동) 2동
전화	043-652-7908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로 한다.

II. 이용정원 및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 : 49인
2. 이용자 모집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포털사이트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기관 홈페이지, 지역신문, 지인 소개, 대상자 방문상담, 지역사회 내유관기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III.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급여계약	1) 계약기간-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계약기간의 연장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 내역서를 별도 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계약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① 입소신청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였을 때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3개월 이상 체납 했을 때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④ 장기부채로 계약을 계속 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⑤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가 있을 때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 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1)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 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2)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 해지일로 한다.
신원인수인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연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신원인수인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배상책임 보험	①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법률상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하여 안전사고에 대비한다.

IV. 기타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 - 운영규정 참조 (시설내 비치되어 있음.)